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8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시민교육위원회 기탁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0. 2.
- (3) 회 부 일 : 2025. 10.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민교육위원회 기탁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민형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민교육위원회 기탁금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6조의2 신설) ○ 내용: 거주자가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가액을 다음에 따라 공제.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①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민형배의원안 2025. 10. 2. 발의(의안번호 13482)

☐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100분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527)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에 규정된 ‘시민교육단체 기탁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유사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다른, 별

도의 세액공제를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거주자가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탁금액 중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527)은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 특정 시민교육단체²⁾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교육을 일선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육단체

1)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적)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시민교육위원회)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둔

(시민교육원·시민교육센터)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며,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도시민교육센터 및 구·시·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음.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금품 기탁)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음.

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0)에 따르면, 시민교육단체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됨.

의 재정확충을 통해 시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³⁾와 비교하여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세제상 우대함으로써 특정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15%인 반면,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110분의 100으로 전액 세액공제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시민교육 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여 이를 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시민교육단체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면⁴⁾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

3)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등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포함됨.

4)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 시민교육위원회에 대한 기탁이 가능하게 됨.

5)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규정으로도 일정부분 기부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측면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일정 구간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다른 공익목적 기관⁶⁾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현재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유이함. 따라서 시민교육위원회에 대해 10만원의 전액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지역 의료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 기관들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

셋째, 시민교육위원회의 성격이 국가기관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으로, 국가기관의 일부임. 따라서 국가기관인 시민교육위원회에 1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세액공제 형태로 국가가 기부자에게 10만원을 돌려주는 형태가 되므로 행정상 비효율이 우려됨.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⁷⁾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학술·문화·예술·종교단체 기부금 등

7)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넷째,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시민교육위원회에의 금품 기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① 시민교육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⁸⁾ 각종 공공기관 등이 기탁금을 받아 예산 외로 금원을 운영하는 점, ② 시민교육단체가 교부받은 금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보아가며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149

8)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한은 없음

9) 2025년 10월 현재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0)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법안심사소위원회)중임.